

## 서울특별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 1. 제정이유

정보취약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 수준이 매우 낮은 가운데 특히, 시각장애인이 행사 등의 현장상황, 영상이나 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 및 사회 참여 편의 증진 등을 도모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장해설을 통한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해설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팩스 : 02)3396-9055
- E-mail : queen@junggu.seoul.kr

# 서울특별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불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

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